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1422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6. 20.

판 결 선 고 2023. 8. 8.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1. 10. 1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5,705,92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705,9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E 주식회사는 2017. 12. 12.경 D에게 150,000,000원을 대출기간 72개월, 이자율 연 6.9%, 연체이자율 연 24%로 각각 정하여 할부금융대출을 하였다. D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9. 12. 23.경 원고에게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그에 관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2649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20. 11. 20. “D는 원고에게 75,614,683원 및 그 중 65,976,449원에 대하여 2020. 3. 5.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9.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20. 12. 5. 확정되었다. D는 2022. 8. 23.경 당시 원고에 대하여 원금 65,976,449원을 포함한 합계 91,738,055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다. 그리고 D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 D의 아버지인 F이 2019. 9. 26.경 사망한 후 2021. 10. 13.경 그 상속재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10. 1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F의 처이자 D의 모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G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22. 2. 8.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2021. 10. 12.경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19,000,000원이었다. 또한 2022. 8. 4.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합계 224,676,640원이다.

라. F이 2019. 9. 26.경 사망할 당시 재산상속인으로는 그 처인 피고(상속지분 3/9), 그 자녀들인 D, H, I(상속지분 각 2/9)가 있었는데, 2021. 10. 12.경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진 것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합계 91,738,055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갖고 있고 이러한 채권은 피고와 D 사이의 2021. 10. 12.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D가 대출원리금 등의 채무만을 부담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서 2021. 10. 12.경 자신에게 상속될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포함한 그 부동산 전체를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1. 10. 1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피담보채무액 19,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205,676,640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24,676,640 피담보채무액 19,000,000원) 중 D의 상속지분 상당액 45,705,920원(= 205,676,640원 × 상속지분 2/9)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1. 10. 1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5,705,9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약 50년 동안 3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F과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이에 따라 F이 사망한 후 D를 포함한 3명의 자녀들이 피고를 위하여 피고가 F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하여 동의를 한 것일 뿐, 피고로서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D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21. 10. 12.경 F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이가 D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

부동산 목록

1. 전라남도 목포시 대 506㎡

2. 전라남도 목포시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독주택 1층 주택 96.48㎡ 끝.

